

**2019년 영농손실 등
공통적용 보상단가 결정**

2019. 6.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감정평가기관 평가·산정

- 토지·물건 등 대부분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 어업권 등 권리,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

□ 사업시행자 직접산정

- 공통적용 단가 산출이 가능한 주거이전비, 영농손실액 등 4종의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산정

* 제42조(분묘보상액), 제48조(영농손실액), 제54조(주거이전비), 제55조(이사비)

<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 방법 >

보상대상	산정 방법	비고
- 이사비 (시행규칙 55조)	통계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임 및 차량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	기산정 (4.17)
- 분묘보상액 (시행규칙 42조)	전북 및 광주·전남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출한 '19 분묘이전비를 산술평균해서 산정	
- 영농손실액 (시행규칙 48조)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 조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 주거이전비 (시행규칙 54조)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가계 조사통계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주거이전비, 영농손실액은 통계자료가 5월중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되어 금회 산정, 이사비·분묘보상액은 기산정('19.04.17.)

□ 근거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따라 영농손실액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직접 산정

□ 보상기준 및 지급액

- (보상기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m²당)의 직전 3년간 평균 × 2년분
- (보상금) 전북 3,170원, 전남(광주) 2,840원

- 직전 3년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단위 : 원/m²)

구 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2019년도 농업손실보상액 [(A+B+C)/3×2]	비 고
	2016(A)	2017(B)	2018(C)		
전북	1,405	1,463	1,897	3,170	
전남(광주)	1,296	1,374	1,593	2,840	

* 2018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단위 : 원/m²)

구 분	농작물총수입 (A)	표본농가 경지면적(B)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C=A÷B)	비 고
전북	28,707,629	15,135	1,897	
전남(광주)	23,259,943	14,597	1,593	

※ <연도별 영농보상금 변경 추이>

(단위 : 원/m²)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
전북	2,999	2,935	2,870	3,170	증 300원(10.5%)
전남(광주)	2,845	2,677	2,670	2,840	증 170원(6.4%)

□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보상 기준 및 지급액

- (보상기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 보상

- 1인~ 5인 : 통계청 발표 가계조사통계 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
+ (5인 초과 가구원수 ×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비용 = (5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5,531,277 - 3,361,766) ÷ 3 = 723,170

- 지급액(단위 : 원)

가구원수	2018년도		2019년도		
	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	가계지출비*	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
1인	4,374,380	8,748,770	2,186,665	4,373,330	8,746,660
2인	7,040,040	14,080,080	3,361,766	6,723,530	13,447,060
3인	8,724,850	17,449,700	4,427,633	8,855,260	17,710,530
4인	10,231,630	20,463,260	5,239,983	10,479,960	20,959,930
5인	11,330,720	22,661,440	5,531,277	11,062,550	22,125,100
6인	12,760,950	25,521,900	6,254,447	12,508,890	25,017,780
7인	14,191,180	28,382,360	6,977,618	13,955,230	27,910,460

* 2018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IV

적용 기준

- 적용대상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

- 적용시기 : 2019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20년도 보상단가 결정시 까지